

제28호(2017. 2. 28.)

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거래 및 외식업 동향

이용선 박한울 이형우 변승연

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1. 경제 및 소비 지표 | 1 |
| 2. 농축산물 도·소매 거래동향 | 3 |
| 3. 외식업 생산 및 고용 동향 | 9 |

한국농촌경제연구원

| | | |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감 수 | 김수석 선임연구위원 | 061-820-2284 | soosuk@krei.re.kr |
| 내용 문의 | 이용선 선임연구위원 | 061-820-2320 | yslee@krei.re.kr |
| 자료 문의 | 성진석 선임전문원 | 061-820-2212 | jssaint@krei.re.kr |

- 「KREI 현안분석」은 농업·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.
-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(www.krei.re.kr)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

요약



- 청탁금지법 시행 후 도매시장, 유통업체 거래실적과 통계청, 한국은행의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농축산물 거래 및 외식업 동향을 분석함.
 - 유통업체 거래실적은 백화점 3사, 대형마트 3사, 농협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집계
- 작년 4/4분기 이후 농림어업과 도소매·음식업의 생산이 감소하거나 성장이 둔화되고, 소비 지출 및 소매판매 증가세 또한 둔화
 - 2016년 4/4분기 농림어업 GDP는 전기 대비(계절조정) 2.8% 감소, 전년 동기 대비 4.8% 감소하여 생산 감소세 심화
 -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GDP는 전기 대비(계절조정) 0.6% 감소하고, 전년 동기 대비 1.8% 증가하여 성장세 둔화
- 법 시행 후 첫 명절인 올해 설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보다 25.8% 감소
 - 백화점, 대형마트, 농협유통을 대상으로 설 명절 전 4주간 선물세트 판매실적을 조사한 결과, 설 식품(농축수산물)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 설 대비 14.4% 감소
 - 설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 설 대비 25.8% 감소
 - 국내산 쇠고기와 과일 판매액은 전년보다 각각 24.4%, 31.0% 감소
- 농축산물 선물 소비 위축에 따라 농업생산액 감소분은 품목별로 생산액의 3~7% 수준인 것으로 추정
 - 동법 시행 후 첫 명절인 2017년 설 선물세트 판매 감소율을 적용하여 품목별 연간 생산액 감소분을 추정한 결과, 한우 2,286억 원, 과일 1,074억 원, 화훼 390~438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
- 법 시행 후 음식점업은 생산이 감소하고 고용 사정도 악화
 - 작년 4/4분기 일반음식점업 생산지수는 91.7로 전년(96.4) 대비 4.9% 감소
 -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3.1%(30,382명) 감소
-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우려되었던 농축산물 거래와 외식 소비 위축이 뚜렷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됨.

법 시행 후 농림어업 생산 감소, 도소매·음식업 성장 둔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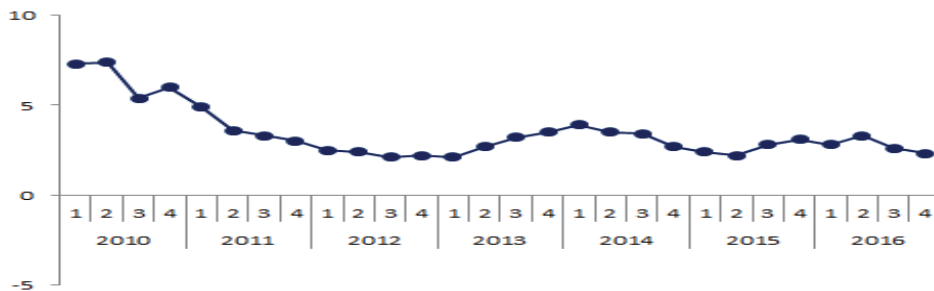
1. 경제 및 소비 지표

□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16년 4/4분기 경제성장 둔화

- 2016년 4/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(GDP)은 전년 동기 대비 2.3% 증가에 그침.
 - 전년 대비 GDP 증가율: ('16년 3/4) 2.6% → ('16년 4/4) 2.3%

그림 1. 분기별 경제성장률 추이(원계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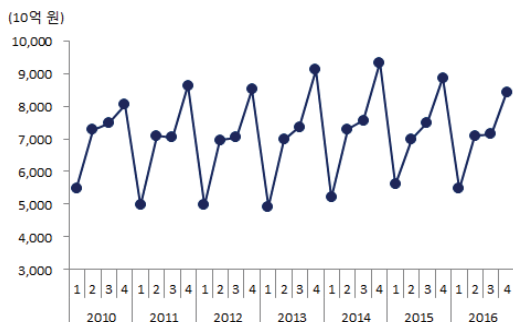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전년 동기 대비)


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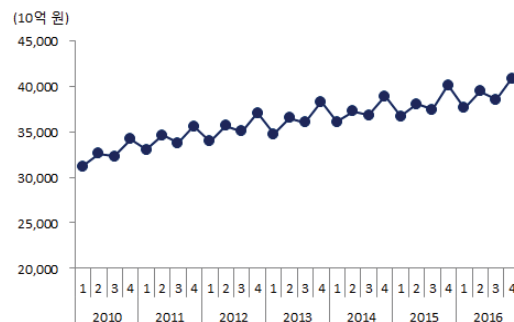
- 2016년 4/4분기 농림어업 부문과 도소매·음식업 부문의 생산이 감소하거나 성장 둔화
 - 농림어업 GDP는 전기 대비(계절조정) 2.8% 감소, 전년 동기 대비 4.8% 감소하여 생산 감소 추세 심화
 -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GDP는 전기 대비(계절조정) 0.6% 감소하고, 전년 동기 대비 1.8% 증가하여 성장세 둔화

그림 2. 농림어업 GDP 변화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

그림 3. 도소매·음식숙박업 GDP 변화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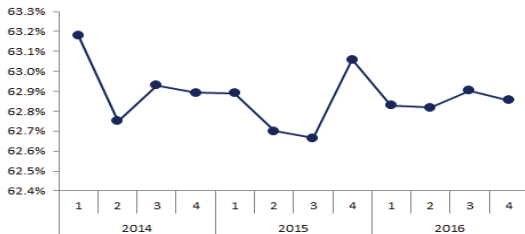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

소비지출 증가세 둔화, 소비자심리 위축

□ 소비지출 및 실질소매판매 증가세 둔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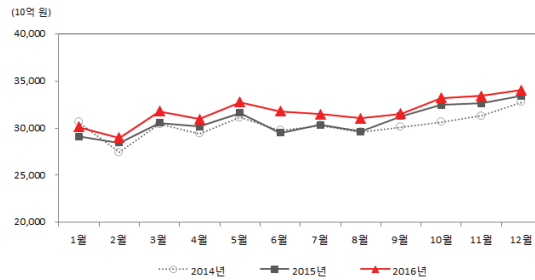
- 민간소비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3/4분기 2.7%에서 4/4분기 1.6%로 감소하였으며, 총소득(GDP) 중 소비지출 비중인 소비성향은 하락세를 보임.
 - 소비성향: ('15년 4/4) 63.06% →('16년 3/4) 62.9 →('16년 4/4) 62.85
- 소매판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6년 3/4분기 3.1%에서 4/4분기 2.2%로 감소함.
 - 음식료품 소매판매 증가율은 동 기간 4.2%에서 3.9%로 감소

그림 4. 소비성향



주: 한국은행 자료에서 산출.

그림 5. 소매판매액



자료: 통계청.

표 2.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소매판매액 전년 대비 증가율

(단위: %, 전년 대비 증감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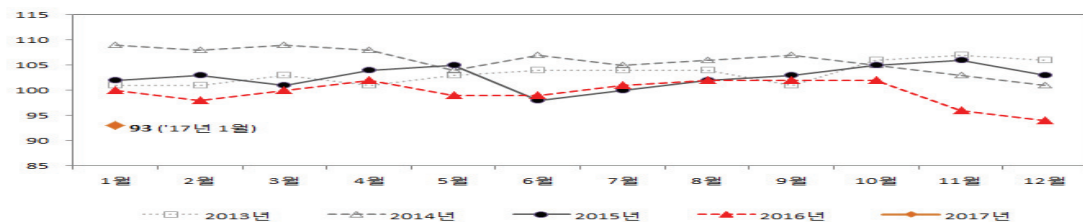
| 구분 | 법 시행 전 | | | 법 시행 후 |
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| 1/4분기 | 2/4분기 | 3/4분기 | 4/4분기 |
| 소매판매 전체 | 4.0 (3.2) | 5.5 (4.6) | 3.9 (3.1) | 3.7 (2.2) |
| 음식료품 | 5.5 (3.1) | 3.9 (3.0) | 6.0 (4.2) | 8.5 (3.9) |

주: 괄호 안의 수치는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한 실질판매액 증가율.
자료: 통계청.

□ 소비심리는 2016년 10월 이후 4개월간 위축 심화

- 소비자심리지수는 2017년 1월에 93으로 전년 동월 대비 8.7% 하락하였음.

그림 6. 소비자심리지수



자료: 통계청.

설 국내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액은 전년보다 25.8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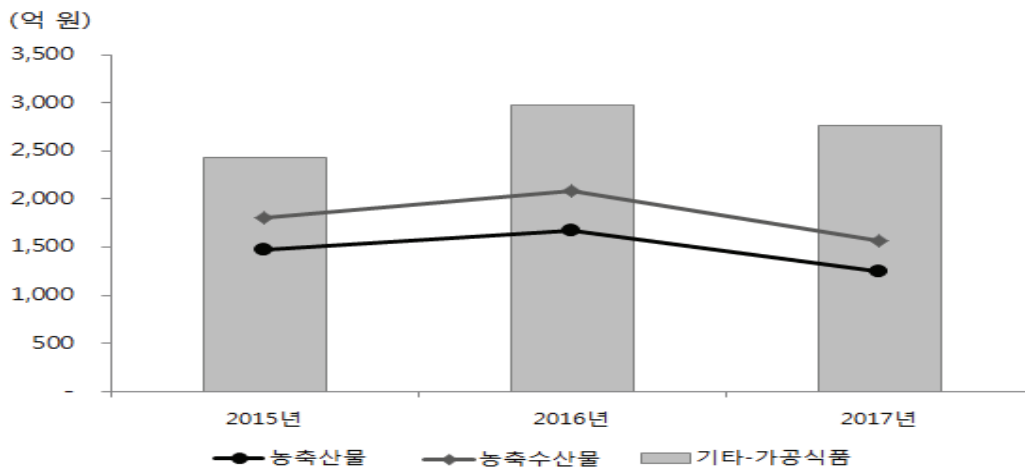
2. 농축산물 도·소매 거래 동향

2.1. 소매유통업체 설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실적

□ 설 판매액은 식품이 전년 대비 14.4% 감소, 이 중 국내산 농축산물은 25.8% 감소

- 주요 소매유통업체 7개사를 대상으로 판매실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.
 - 대상: 백화점(신세계·롯데·현대), 대형마트(이마트·롯데마트·홈플러스), 농협하나로유통
 - 기간: 설 명절 전 4주간('16. 12. 31. ~ '17. 1. 27.) 기준
- 2017년 설 식품(농축수산물식품)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 설 대비 14.4% 감소하였음.
 - 설 식품 선물세트 판매액은 5,356억 원에서 4,585억 원으로 감소
 - 농축수산물은 23.7% 감소하고 가공식품은 8.4% 감소
- 국내산 농축산물 설 선물세트 판매액은 1,242억 원으로 작년 설 대비 25.8% 감소하였는데, 이는 2015년 설보다도 적은 수준임.

그림 7. 국내산 설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액



주: 백화점 3사, 대형마트 3사, 농협하나로유통 등 7개 소매유통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집계.

수입품, 5만 원 이하 선물세트 비중 증가

□ 국내산 품목별 설 선물 판매액은 쇠고기와 과일이 크게 감소

- 국내산 쇠고기와 과일 설 선물세트 판매액은 전년 대비 각 24.4%, 31.0% 감소하였음.
 - 홍삼제품 판매액은 농협을 제외한 6개사 기준 360억 원으로 전년보다 17.0% 감소

표 3. 품목별 설 선물세트 판매액 추이(2015~17)

(단위: 백만 원, %)

| 구분 | | 쇠고기 | 과일 | 특작 | 농축산-계 | 가공식품 등 | 식품-계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2017 | (12. 31.~1. 27.) | 62,347 | 52,488 | 9,384 | 124,220 | 276,130 | 433,325 |
| 2016 | (1. 11.~2. 7.) | 82,496 | 76,114 | 8,823 | 167,432 | 297,304 | 505,866 |
| 2015 | (1. 22.~2. 18.) | 74,540 | 63,915 | 8,235 | 146,690 | 242,564 | 423,475 |
| 증감률 | 2017/16 | -24.4 | -31.0 | 6.4 | -25.8 | -7.1 | -14.3 |
| | 2016/15 | 10.7 | 19.1 | 7.1 | 14.1 | 22.6 | 19.5 |

주: 농축산에는 쇠고기, 과일, 특작(버섯 등)이 포함되며, 식품에는 농축산 외에 수산, 가공식품 등이 모두 포함됨.

□ 수입 및 5만 원 이하 가격대의 선물세트 비중이 증가

- 수입 농축산물 선물세트의 비중은 2015년 3.6%에서 2017년 5.4%로 증가하였음.
 - 농축산물 선물세트 수입 비중: ('15년) 3.6% → ('16년) 4.2 → ('17년) 5.4
- 가격대별 선물세트의 비중은 5만 원 이하 금액대가 증가함.
 - 5만 원 이하 비중: 가공식품 등 77.0% → 81.7, 농축산물 23.2% → 26.1
 - 특히 과일과 특작(버섯) 등으로 구성된 5만 원 이하 선물세트 비중이 크게 증가

표 4. 품목별·가격대별 설 선물세트 비중 변화

(단위: %)

| 구분 | 쇠고기 | | 과일 | | 특작 | | 농축산-계 | | 가공식품 등 | | 식품-계 |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| 5만 원 이하 | 5만 원 초과 | 5만 원 이하 | 5만 원 초과 | 5만 원 이하 | 5만 원 초과 | 5만 원 이하 | 5만 원 초과 | 5만 원 이하 | 5만 원 초과 | 5만 원 이하 | 5만 원 초과 |
| 2017 | 1.2 | 98.8 | 57.4 | 42.6 | 27.2 | 72.8 | 26.1 | 73.9 | 81.7 | 18.3 | 60.4 | 39.6 |
| 2016 | 7.5 | 92.5 | 44.2 | 55.8 | 5.4 | 94.6 | 23.2 | 76.8 | 77.0 | 23.0 | 54.2 | 45.8 |
| 2015 | 2.6 | 97.4 | 41.7 | 58.3 | 5.7 | 94.3 | 19.1 | 80.9 | 78.1 | 21.9 | 50.3 | 49.7 |

주: 농축산에는 쇠고기, 과일, 특작(버섯 등)이 포함되며, 식품에는 농축산물 외에 수산물, 가공식품 등이 모두 포함됨.

한우 출하량 감소에도 가격 하락

2.2. 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축산물 도매·산지거래 동향

□ (한우) 도축량이 감소하면서도 수요 부진으로 가격 하락

- 2016년 10월~2017년 1월 한우 도축량이 전년 동 기간보다 7.1% 감소하면서도 가격도 9.6% 하락하여, 도매거래액은 16.1%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.
 - 한우 도축: ('15년 10월~'16년 1월) 294,232두 → ('16/17년) 273,230두(7.1% 감소)
 - 한우 1등급 평균 도매가격: ('15/16년) 18,266원/kg → ('16/17년) 16,781원(9.6% 하락)
- 2016년 1~9월 한우 가격은 전년 동 기간보다 18.2% 높았으나, 10월 이후에는 도축량 감소에도 가격이 하락하였음.

표 5. 청탁금지법 전후 쇠고기 수급 및 가격 동향

| 구분 | 1~9월 | | | 10~1월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| 2015년 | 2016년 | 증감률 (%) | 2016년 | 2017년 | 증감률 (%) |
| 한우 도축 마릿수(두) | 692,554 | 554,357 | -20.0 | 294,232 | 273,230 | -7.1 |
| 한우 1등급 평균 도매가격(원/kg) | 15,944 | 18,839 | 18.2 | 18,266 | 16,510 | -9.6 |
| 쇠고기 수입량(톤) | 219,898 | 259,541 | 18.0 | 102,695 | 135,822 | 32.3 |

- 한우는 법 시행 후 수요 감소로 8.8%의 가격하락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.
 - 한우 도축량 7.1% 감소 → 한우 가격 5.3% 상승요인(신축성계수 0.74 적용)
 - 수입량 32.3% 증가 → 한우 가격 4.5% 하락요인(신축성계수 0.14 적용)

표 6. 한우 가격 변동요인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격하락 효과 추정('16. 10.~'17. 1.)

| 구분 | 한우 가격 변동 요인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|
| | 자체공급(감소) | 수입량(증가) |
| 물량 전년 대비 증감률(a) | -7.1% | 32.3% |
| 신축성계수(b) | 0.74 | 0.14 |
| 물량 증감에 의한 가격변동 요인(a×b) | 5.3% | -4.5% |
|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가격하락 효과 추정 | 자체공급 감소효과 + 수입량 증가효과 - 실제 가격 하락률 5.3%+ (-4.5%) - (-9.6%) = 8.8% | |

법 시행 후 화훼 거래금액, 회원 매출액 감소

□ (화훼) 난 등 분화류 거래금액 18.5% 감소

- 분화류는 출하가 전년보다 11.2% 감소하면서도 소비가 위축되어 가격도 13.2% 하락함.
 - 난류 평균가격(9. 28.~익년 2. 10.): ('16년) 13,300원/분 → ('17년) 10,300(22.6% 하락)
- 분화류 중 특히 선물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난류의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.

표 7.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화훼류 도매시장 거래 동향

| 구분 | | '16. 9. 28.~'17. 2. 10. ('15. 9. 30.~'16. 2. 12.) | | |
|-----|------------|---|--------|--------|
| | | 15/16 | 16/17 | 증감률(%) |
| 화훼류 | 거래금액(백만 원) | 38,894 | 37,333 | -4.0 |
| | 거래량(천분) | 11,309 | 10,245 | -9.4 |
| | 단가(천/분) | 7.4 | 7.5 | 1.0 |
| 분화류 | 거래금액(백만 원) | 15,176 | 12,375 | -18.5 |
| | 거래량(천분) | 4,399 | 3,879 | -11.8 |
| | 단가(천/분) | 7.6 | 6.6 | -13.2 |
| 난류 | 거래금액(백만 원) | 10,123 | 7,666 | -24.3 |
| | 거래량(천분) | 1,690 | 1,501 | -11.2 |
| | 단가(천/분) | 13.3 | 10.3 | -22.6 |
| 관엽류 | 거래금액(백만 원) | 5,053 | 4,709 | -6.8 |
| | 거래량(천분) | 2,709 | 2,378 | -12.2 |
| | 단가(천/분) | 3.7 | 4.0 | 8.1 |

□ 회원 매출액은 법 시행으로 6.2~7.0% 감소 추정

- 상위 3개 카드사(비씨, 신한, 삼성) 실적에 의하면 회원 매출액은 전년 대비 1.8% 감소한 반면, 법 시행으로 매출이 6.2~7.0%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.
 - 전년 대비 매출증감률(%): ('16. 1.~9.) 4.4 → ('16. 10.~'17. 1.) -1.8
 - 계량모형 추정 시, 매출감소효과(예측치-실제치)가 6.95%로 추정¹⁾

표 8. 회원 매출액 변화

(단위: 억 원, %)

| | | 1~9월 | 10월~익년 1월 |
|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
| 2016/17 | | 4,917 | 1,913 |
| 2015/16 | | 4,711 | 1,948 |
| 2014/15 | | 4,493 | 1,834 |
| 증감률 | 2016/15 | 4.4 | -1.8 |
| | 2015/14 | 4.9 | 6.2 |

자료: 3개 카드사(비씨·신한·삼성) 결제승인실적 자료.

1) 계량모형 추정을 위해 본 원의 성재훈 박사의 도움을 받았음.

사과·배 거래와 인삼 거래도 위축

□ (과일) 사과와 배 거래액은 10월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감소폭 확대

- 과일(사과, 배) 도매거래액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(8~9월)에는 전년 대비 3.1% 증가하였으나, 법 시행 후에는 10~12월에 7.1%, 1월에 19.6% 감소하였음.
- 사과는 2017년 1월 가락시장 거래량이 전년보다 28.7% 감소하면서도 평균가격도 16.3% 하락하였으며, 배는 2017년 1월 평균가격이 전년보다 34.6% 하락하였음.

표 9.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과일류 도매거래 동향

| 구분 | 8~9월 | | | 10~12월 | | | 1월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|
| | 2015 | 2016 | 증감률 (%) | 2015 | 2016 | 증감률 (%) | 2015 | 2016 | 증감률 (%) | |
| 과일류 (사과+배) | 거래금액(백만 원) | 64,575 | 66,575 | 3.1 | 48,742 | 45,264 | -7.1 | 36,926 | 29,693 | -19.6 |
| | 거래량(톤) | 25,007 | 26,823 | 7.3 | 26,944 | 25,453 | -5.5 | 14,716 | 15,760 | 7.1 |
| | 단가(원/kg) | 5,085 | 4,940 | -2.9 | 3,520 | 3,374 | -4.2 | 5,078 | 3,766 | -25.8 |
| 사과 | 거래금액(백만 원) | 40,217 | 38,573 | -4.1 | 36,716 | 32,946 | -10.3 | 22,647 | 16,145 | -28.7 |
| | 거래량(톤) | 14,104 | 14,992 | 6.3 | 19,670 | 16,533 | -15.9 | 9,328 | 7,943 | -14.8 |
| | 단가(원/kg) | 2,852 | 2,573 | -9.8 | 1,867 | 1,993 | 6.8 | 2,428 | 2,033 | -16.3 |
| 배 | 거래금액(백만 원) | 24,358 | 28,002 | 15.0 | 12,026 | 12,318 | 2.4 | 14,279 | 13,548 | -5.1 |
| | 거래량(톤) | 10,904 | 11,831 | 8.5 | 7,275 | 8,920 | 22.6 | 5,389 | 7,817 | 45.1 |
| | 단가(원/kg) | 2,234 | 2,367 | 5.9 | 1,653 | 1,381 | -16.5 | 2,650 | 1,733 | -34.6 |

자료: 서울시농수산물공사(가락시장 기준).

□ (인삼) 산지 인삼 거래는 매우 위축

- 산지의 인삼류 2017년 설 명절 판매액은 전년 대비 23.3%, 수삼은 35.8% 감소함.
 - 인삼의 이용은 수삼용 34.3%, 가공용 65.7%로 가공용 비중이 높으며, 가공용은 대부분 홍삼용임.
 - 산지 인삼농협의 인삼류 총매출액은 2016년 1,331억 원으로 전년보다 6.0% 감소하였으나, 금년 설 명절에는 68.9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.3% 감소

표 10. 전국 인삼농협 판매실적

| | 2015년 | 2016년 | 증감률 (%) | 2016년 설 | 2017년 설 | 증감률 (%) |
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전체 매출(만 원) | 14,165,600 | 13,312,850 | -6.0 | 898,278 | 688,613 | -23.3 |
| 수삼(만 원) | 6,824,400 | 5,319,300 | -22.1 | 263,940 | 169,500 | -35.8 |

주: 설 명절 전 1개월간 집계치.

소비 위축에 따라 품목별 생산액 3~7% 감소 추정

2.3.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업생산 감소액 추정

□ 선물 소비 위축에 따른 농업생산 감소액은 품목별로 3~7% 수준

- 법 시행 후 첫 명절인 2017년 설 선물세트 판매감소율을 적용하여 품목별 연간 생산액 감소분을 추정하였음.
 - 한우 2,286억 원, 과일 1,074억 원, 화훼 390억~438억 원 감소 예상 (인삼은 미포함)

표 11. 품목별 농업생산액 감소분 추정치

| | 2015년 생산액 (억 원, A) | 선물용 비중 (%, B) | 선물세트 판매감소율 (%,C) | 생산액 감소분 (D=A×B×C)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한 우 | 44,409 | 21.1 | -24.4 | -2,286 |
| 과 일 | 36,869 | 9.4 | -31.0 | -1,074 |
| 화 훼 | 6,298 | -6.20 | | -390 |
| | | -6.95 | | -438 |

법 시행 이후 음식점업 생산 감소, 고용 사정도 악화

3. 외식업 생산 및 고용 동향

□ 법 시행 후 일반음식점업 생산은 전년 대비 4.9% 감소 추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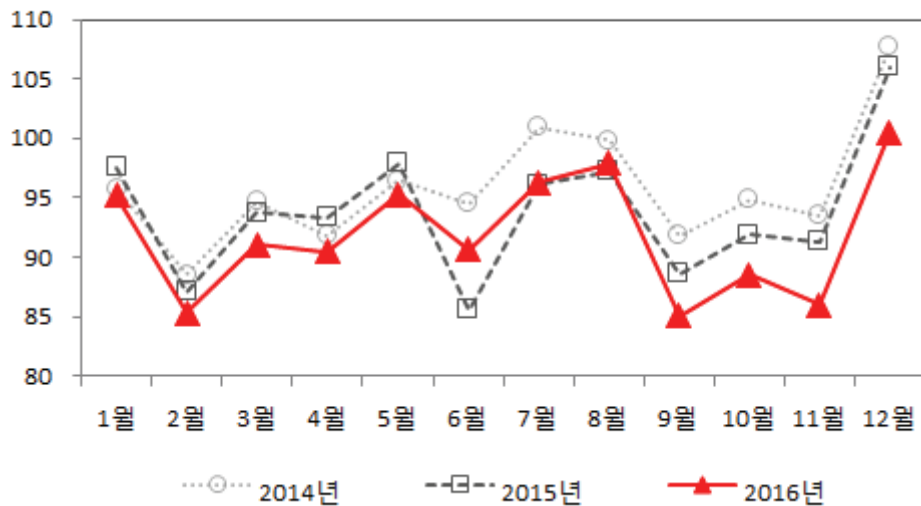
- 2016년 4/4분기 일반음식점업 생산지수는 91.7로 전년 대비 4.9% 감소하였으며, 전분기보다 하락함.
 - 일반음식점 생산지수(2010=100): ('15년 4/4) 96.4 → ('16년 4/4) 91.7

표 12. 일반음식점업 생산지수 추이

| | | 1~3분기 (1~9월) | 4분기 (10~12월)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2016년 | | 91.9 | 91.7 |
| 2015년 | | 93.0 | 96.4 |
| 2014년 | | 94.9 | 98.7 |
| 증감률 | 2016/15 | -1.2 | -4.9 |
| | 2015/14 | -2.0 | -2.3 |

주: 분기별 수치는 월 평균.
자료: 통계청.

그림 8. 일반음식점업 월별 생산지수



자료: 통계청.

□ 법 시행으로 인한 음식점업 생산 감소율은 3.7%p로 추정

- 2016년 4/4분기 일반음식점업 생산의 전년 대비 감소율(4.9%)은 청탁금지법 시행 전인 1~3분기의 생산 감소율(1.2)에 비해 3.7%p 더 커졌음. 이는 음식점업 생산 활동이 법 시행에 따라 전반적인 소비 감소에 추가적으로 더욱 위축된 것으로 추정됨.
 - 일반음식점업 생산 전년 대비 감소율(%): ('16년 1~3분기) -1.2 → ('16년 4/4) -4.9
- 세부 업종별로는 한정식, 한우구이, 수산전문점(해산물, 일식)의 매출 감소폭이 큰 것으로 추정됨.

□ 법 시행 후 고용 사정 악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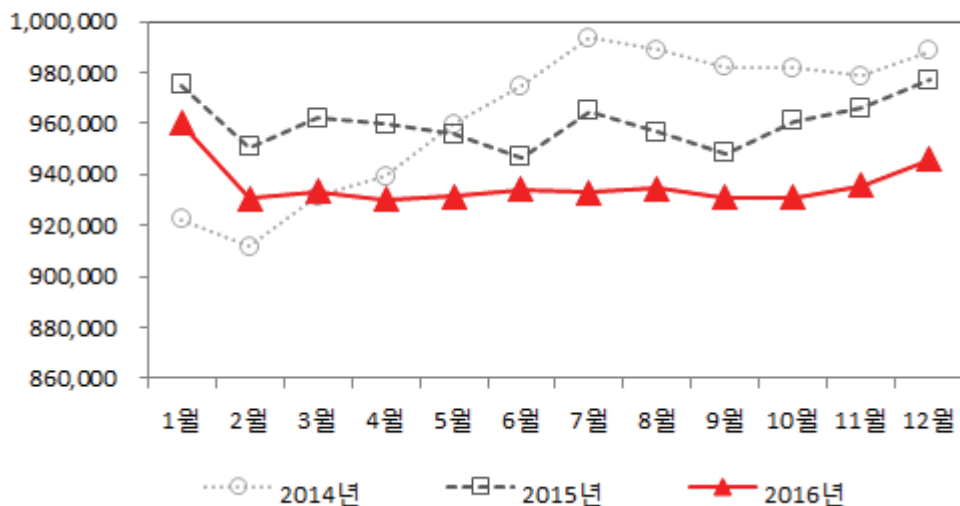
- 2016년 4/4분기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3.1%(30,382명) 감소
 - 4/4분기 월평균 음식·주점업 종사자 수: ('15년) 968천 명 → ('16년) 938

표 13.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

| | | 1~3분기 (1~9월) | 4분기 (10~12월)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2016년 | | 935,274 | 937,577 |
| 2015년 | | 957,634 | 967,959 |
| 2014년 | | 955,870 | 982,816 |
| 증감률 | 2016/15 | -2.3 | -3.1 |
| | 2015/14 | 0.2 | -1.5 |

주: 분기별 수치는 월 평균.
자료: 고용노동부.

그림 9. 음식점 및 주점업 월별 종사자 수



자료: 고용노동부.

KREI 현안분석 제28호

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거래 및 외식업 동향

등 록 제6-0007호(1979. 5. 25.)
발 행 2017. 2. 28.
발 행 인 김창길
편집위원 김수석, 마상진, 황윤재, 이대섭, 지인배, 심재현, 구자춘
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
우)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
대표전화 1833-5500 <http://www.krei.re.kr>
인 쇄 (주)한디자이크퍼레이션
02-2269-9917 admin@han-d.co.kr

-
-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.
 -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.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.
-